

# 북서울 꿈의 교회 청년회(프레엘) 회칙

## [제 1 장] 총칙

### 제 1조. 명칭

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서울 꿈의 교회 청년회[프레엘(F Re-El)]라 한다.

### 제 2조. 소속

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서울 꿈의 교회 내에 둔다.

### 제 3조. 목적

1항 : 본 회의 목적은 회원으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66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, 배우고, 훈련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함에 있다.

2항 :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양하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다.

3항 : 개혁주의 신앙생활로써 하나님 중심, 성경 중심, 교회를 중심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섬김(봉사)과 화목(친교)과 활동(특히 구제활동)을 하게 함에 있다.

## [제 2 장] 회원의 자격과 구분

### 제 4조. 가입

본 회의 가입은 본 회의 입회원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면 된다.

### 제 5조. 자격

본 회의 목적을 달성, 협력하는 20세 이상 미혼자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 (단, 나이구분은 기수에 따른다.)

### 제 6조. 구분

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1항(정회원) : 정회원은 최근 1년 정기집회에 4회 이상 출석한 자와, 타 교회에서 교적을 이명한 자로서 선거권, 피선거권, 발언권, 결의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행할 의무와 그 밖의 각종 행사,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. 정회원은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의 개회요건에 해당하는 재적인원수에 포함한다. 단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제 9조에 근거한다.

2항(준회원) : 준회원은 최근 1년 정기집회에 3회 이하 출석한 자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출석한 자와 타 교회에서 교적을 이명한 자로서 재적인원 수에 포함되는 준회원은 선거권, 결의권, 발언권은 있으나, 피선거권은 없다. 단, 준회원은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의 개회요건에 해당하는 재적인원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3항 : 준회원은 4회 이상 출석 할 때부터 정회원이 된다.

4항(재적인원) : 준회원 이상으로 하되, 타교회로 교적을 이명한 자는 제외한다.

## [제 3 장] 조직과 직무

### 제 7조. 지도

1항 : 본 회의 목양적(목회적) 지도에는 당회에서 파송한 지도교역자가 봉사하며 기타 행정적 지도는 당회에서 임명한부장이 협력 봉사한다.

2항 : 본 회의 임역원 및 회원은 지도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, 협력, 봉사한다.

### 제 8조. 임원단의 구성

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단을 둔다.

1항 : 임원단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 각 1인씩 5명 이하로 구성한다.

2항 :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. 단, 최대 2개의 직무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.

3항 : 임원단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 5장 선거 부분을 적용한다.

#### 제 9조. 임원의 자격

1항 : 임원은 세례교인으로 한다.

2항 : 임원은 본회에 당해 25회 이상 출석한 자로 하되, 기한은 피선거권 공고 전으로 한다.

#### 제 10조. 임원의 직무

1항(회장) : 회장은 본회를 대표, 총괄하며 제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2항(부회장) 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항(총무) :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며 본 회 소속의 각 조직 및 역원을 관장한다.

4항(서기) : 서기는 본 회의 기록, 사무 및 서무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
5항(회계) :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
#### 제 11조. 역원의 구성

1항(구성) : 역원은 임원단의 결정에 의해서 선출되며 다수를 둘 수 있다.

2항(자격) : 역원은 정회원으로서 세례교인으로 한다.

3항(직무) : 역원의 직무는 임원회에서 부여하며 임원회가 관장한다.

#### 제 12조. 임원과 역원의 임기

1항 : 임원과 역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차기년도 12월까지로 한다.

2항 : 12월은 인수인계의 달로 한다.

#### 제 13조. 임원과 역원의 충원

1항 : 임원과 역원의 사퇴표명이 있어 임원과 역원을 추가로 선임해야 할 경우 충원한다.

2항 : 회장과 부회장의 결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충원한다.

3항 :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총무, 서기, 회계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임한다.

4항 :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.

5항 : 충원된 임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6항 : 임원을 충원할 경우 정회원을 기준으로 한다.

### [제 4 장] 회의 및 총회

#### 제 14조. 회의 및 총회

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 및 총회를 개최한다.

1항(정기총회) :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, 회계보고, 서기보고, 임원선출, 회칙개정 등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
2항(임시총회) :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동조 1항에서 기재된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
3항(월례회) : 월례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본 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보고, 심의하며 기타 안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.

4항(임원회, 임역원회) :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
#### 제 15조. 회의 및 총회 개회요건

1항(공고) : 임원회에서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 개회 전에 제6조를 고려하여 개회요건에 해당하는 재적인원을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

2항(개회요건) :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된다.

#### 제 16조. 회의 및 총회 결의요건

1항(일반사항) : 회의 및 총회의 안건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가결된다.

2항(회칙개정) : 회칙의 개정은 참석 인원의 2/3 이상의 결의로 가결된다.

3항(임역원 선출) : 임역원 선출에 필요한 절차, 선거, 기타 제반 사항은 제5장 선거 부분에 따른다.

4항 :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규정과 그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## [제 5 장] 선거

### 제 17조.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

1항 : 임원회에서는 선거일 4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2항 :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임역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18조.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

1항 :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.

2항 :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주 전까지 피선거권자를 공고해야 한다. 단, 비전트립 팀장은 피선거권자에서 제외된다.

3항 :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주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. 단, 이때 후보자는 피선거권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치고 후보자 등록에 대한 긍정 의사 를 밝힌 회원으로 한정한다.

4항 : 최소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3인 이상의 추천 및 후보자 투표 등으로 정, 부회장 합하여 3인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출 한다. 단, 1인당 후보추천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동의 및 재청은 3회 이하로 제한한다.

5항 : 선거일 2주 전까지 선거방법 및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공고한다.

6항 :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임역원회에서 지원한다.

7항 : 제4항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퇴의사를 최소 선거 일 주일 전까지 표명해야 한다.

### 제 19조. 선거

1항 : 선거권은 18조 3항에 명시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.

2항 :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선거참여가 있어야 선거가 성립하며 유효성이 인정된다.

3항 : 본 회 선거는 직접, 평등, 비밀투표로 하며 무기명 직선제로 다음과 같다.

4항 : 부회장 선출은 정회장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들 중에서 선출한다. 정, 부회장의 선출은 참여한 투표자 2/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 (단, 당선자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2인 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,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.)

### 제 20조.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

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된 정, 부회장을 공고하며 선거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.

## [제 6 장] 집회 및 운영

### 제 21조. 집회 및 운영

1항 : 본 회의 집회는 정기집회로 모이며, 신앙 훈련과 신앙 활동을 한다.

2항 : 본 회의 운영은 교회(당회)의 방침 아래 운영한다.

3항 : 각종 활동 및 그룹 활동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진행하되 지도자의 승인과 함께 자율적으로 한다.

### 제 22조. 재정

1항 : 본 회의 재정은 교회 교육비와 회원의 회비, 그 외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.

2항 : 본 회의 재정은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임원회 결의로 회장 승인 하에 임원회 결의로 회

계가 출납하며 청구자가 집행한다.

3항 : 본 회의 자치 활동과 육성을 위해 필요에 따り 자치 회비를 수납,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임원회 결의에 따른다.

#### 제 23조. 권징제도

본 회원 중 본 회의 목적과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당회에서 임명된 부장은 이를 당회에 보고하며 당회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라 권징을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본 회의 신앙적 유의를 주도록 한다.

### [제 7 장] 부칙

본 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유효하다.

회칙발의 : 2024. 11. 10

발의자 : 김성민